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540329 판결 [전세보증금반환청구]

전 문

원 고 경기도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룡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1. 11. 24. 접수 제82553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진만

별지